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 월 30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238호

붙임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명예시민의 취소) 시장은 명예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여수시 명예시민증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후 시의회 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2.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3.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4.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19사건에 대해 역사왜곡 행위를 하는 경우
6.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여수시민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5조(명예시민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u></p>	<p><u>제5조(명예시민의 취소) 시장은 명예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여수시 명예시민증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u> <u>2.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u> <u>3.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u> <u>4.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u> <u>5.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19사건에 대해 역사왜곡 행위를 하는 경우</u> <u>6.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여수시민의 명예를 실추한 경</u>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오
<삭 제>